

|   |  |  |      |              |
|---|--|--|------|--------------|
|  | <h2 style="margin: 0;">학생위원회 운영규칙</h2> |  | 규정번호 | 5-0-6        |
|   |  |  | 제정일자 | 1987.09.01   |
|   |  |  | 개정일자 | 2017.09.01   |
|   |  |  | 개정번호 | Ver.6 총페이지 3 |

**제1조(설치 및 명칭)** 이 규칙은 학칙 제46조, 48조, 53조, 56조에 의거 설치된 학생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라 칭한다. <개정 2017.09.01.>

**제2조(목적)** 위원회는 총장을 보좌하는 자문·심의기관으로서 학생지도 및 장학 등 학생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람직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09.01.>

**제3조 (구성 및 임기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학생부처장이 된다.<개정 2017.09.01.>
2.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수 약간 명으로 한다.
3.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9.01.>

**제3조의 2 (복지관리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)**

- ① 복지관리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소위원회의 위원은 학생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의 교직원 및 학생대표 3인(총학생회 복지부장, 총학생회 여학생부장, 대의원회 복지부장)으로 총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7.09.01.>
  2.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부처장으로 한다.
- ② 복지관리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  1. 위원의 임기는 학생위원회 위원 임기 또는 학생대표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
  2.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③ 복지관리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의견을 수합하여 학생위원회에 상정한다.
  1. 학생복지시설의 개선 및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09.01.>
  2. 학생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09.01.>
  3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<개정 2017.09.01.>
- ④ 복지관리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의 학내·외 행사 및 생활에 관한 사항
2. 학생의 상·벌에 관한 사항
3. 학생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
4.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
5. 학생회 이외의 단체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
6. 학생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09.01.>

7. 학생의 장학금의 지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09.01.>
8. 장학금에 관한 규칙의 제·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09.01.>
9. 학내·외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
10. 학생 보건 및 건강 활동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09.01.>
11. 학생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09.01.>
12. 본 위원회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13. 기타 학생 관련 총장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.  
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 
 ③ 회의는 이 규칙 제4조의 기능과 관련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9.01.>

**제6조(보고 및 시행)**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.  
 ②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<개정 2017.09.01.>

**제7조(규칙의 제정 및 개정)**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
 (2) (경과조치)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학생위원회 운영규칙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